

인쇄하기

인쇄하기

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

[시행 2019.06.30.]

(제정) 2011.09.19 조례 제 661호
(일부개정) 2014.11.24 조례 제7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
(일부개정) 2015.11.10 조례 제834호
(일부개정) 2019.06.30 조례 제1083호

관리책임부서 : 행복나눔과
연 락 처 : 709-437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장애인가정"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「**장애인복지법**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.
2. "출산지원금"이란 장애인가정에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.<개정 2019.06.30>

제3조(지급대상)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.<개정 2019.06.30>
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(이하 "보호자"라 한다)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9.06.30>

제4조(출산지원금)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 다만,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9.06.30>

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 이내<개정 2019.06.30>
2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80만원 이내<개정 2019.06.30>
3. 삭제<2019.06.30>

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으며, 부모 중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.<개정 2019.06.30>

[제목개정 2019.06.30]

제5조(지급신청 등)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,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9.06.30>
 ② 읍·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6.30>
 ③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거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6.30>

제6조(지급절차) ① 읍·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1.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
 2.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
 3. 신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<개정 2019.06.30>
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6.30>

제7조(환수조치)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6.30>

제8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조례 제661호, 2011.9.19>

제1조(시행일)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조례 제772호, 일부개정 2014.11.2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조례 제834호, 일부개정 2015.11.1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조례 제1083호, 일부개정 2019.6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,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2019년 7월 1일 전 출생아의 출산지원금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다목 중 “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”으로 한다.

②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장애인(3등급 이상)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③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호 중 "1급 ~ 3급"을 "장애의 정도가 심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"4급 ~ 6급"을 "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"으로 한다.